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안 제4조제4항에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외무공무원법」 개정(2026.3.10.)으로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이에 맞게 개정문을 정비하는 한편, 이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조제4항’을 함께 정비함.

수정주요내용

- 가. 특임공관장의 퇴직에 관한 규정은 이미 「외무공무원법」 개정(2026.3.10.)으로 반영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4항 삭제).
- 나. 안 제4조제4항을 정비함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에서 ‘제4조제4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을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 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	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 · ⑥ (생략)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 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	----- ----- ----- ----- ----- ----- ----- ----- ----- <u>30일</u>-----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 ----- ----- ----- ----- ----- ----- ----- -----	⑤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	---	--	---

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 ----- ----- ----- ----- ----- ----- <u>30일</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u>제4조제4항</u> 및 <u>제26조제4항</u> · <u>제7항</u>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	부 칙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u>제26조제4항</u> 및 <u>같은 조 제7항</u> ----- ----- ----- ----- -----

		부터 적용한다.	-----.
--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8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홍기원 · 이언주 · 김태년
서미화 · 윤종균 · 윤후덕
한민수 · 이병진 · 최혁진
전현희 · 신영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 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제7항).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미 「외무공무원법」 개정(2026.3.10.)으로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4항 삭제).

나. 안 제4조제4항을 정비함에 따라 부칙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4조제4항’을 삭제함(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장의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략)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일</u>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④ ----- ----- ----- ----- ----- ----- ----- ----- ----- ----- ----- <u>30일</u> ----- -----.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	⑦ ----- ----- ----- ----- ----- ----- ----- -----

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	-----
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	-----.
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	-----
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u>60</u>	----- <u>30</u>
<u>일</u> 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	<u>일</u> -----
다.	--.